

문서번호	어르신청소년과-10453
결재일자	2016.3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 무 관	청 소 년 팀 장	어 르 신 청 소 년 과	복 지 환 경 국 장
김혜원	이현주	김종섭	전결 03/24 장기현
협 조			

2016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계획

- 추진근거 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
- 사업기간 : 2016. 4 ~ 11월
- 신청기간 : 2016. 3. 24 ~ 4. 8
- 지원대상 :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 ~ 18세 청소년
※ 다른 법률의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
- 지원내용 : 생활, 건강, 학업, 상담지원 등
- 지원기간 : 1년 이내(필요시 1년 범위내 1회 연장)
- 지원방법 : 금전지원 또는 물품·용역
※ Cys-Net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후 구에서 입금
- 소요예산 : 14,26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복 지 환 경 국
어르신청소년과

2016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계획

사회적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에게 현금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근거 및 방향

□ 추진근거
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 및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- 2016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□ 추진방향

- 생계·건강·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에 따른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
-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
II 2015년 사업실적

지원종류	지원대상	지원금액
총계	6명	12,200천원
활동지원	1명	200천원(25천원×8개월)×1명
생활지원+활동지원 (기초생계비, 문화활동비 등)	5명	2,400천원(300천원×8개월)×5명

Ⅲ

사업개요

- **사업기간** : 2016. 4 ~ 11월
- **지원대상** : 만 9세 이상 ~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,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
- **지원기간** : 1년 이내로 하되, 총 지원기간 3년까지 가능
- **지원내용** : 생활지원(기초생계비, 숙식제공), 건강지원, 학업지원, 자립지원, 상담지원, 법률지원, 활동지원(수련, 문화활동비 등)
- **추진일정**
 - 지원대상 신청접수 : 2016. 4. 8 한(동주민센터접수)
 -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 : 2016. 4. 18 한(복지정책과)
 - 대상자 지원 : 2016. 6 ~ 11월
- **소요예산** : 14,26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**홍보방법** :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 시설, 협회에 공문발송

Ⅳ

세부추진계획

- **사업기간** : 2016. 4 ~ 11월
- **지원대상**
 - 만 9세 이상 ~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,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
 -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
○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

- 생활, 건강지원 : 중위소득 60%이하
-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 : 중위소득 72%이하

※ 중복지원 금지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

예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, 특별지원에서는 ‘생활지원’, ‘건강지원’은 불가하나, ‘학업, 자립, 상담지원’ 등은 지원 가능

□ **지원기간**

- 1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
단, 학업과 자립지원일 경우 2번까지 연장가능(총 지원기간 3년까지 가능)

□ **지원범위**

- 원칙 : 지원종류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
- 예외 :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이상 지원가능
- 기타 지원은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

□ **지원종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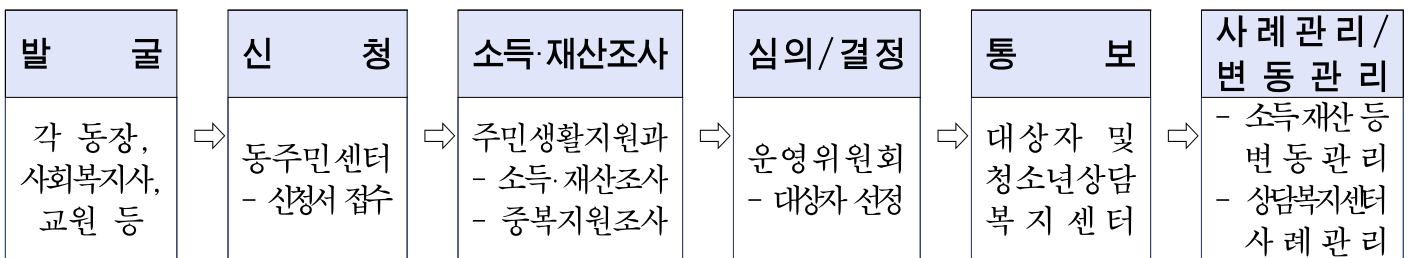
구 분	지 원 내 용	지 원 금 액	비 고
생활지원	기초생계비, 숙식 제공 ※ 20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현금급여기준(1인)	월 50만원 이내	
건강지원	진찰·검사 /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 처치·수술, 그 밖의 치료 / 입원 등	연 200만원 내외	
학업지원	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,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	월 15만원 이내 (수업료, 학원운영비) 월 30만원 이내(검정고시)	

자립지원	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	월 36만원 이내	
상담지원	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상담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 등) 참가비 ※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비는 지원대상 아님	월 20만원 이내(상담지원비) 년 25만원(별도, 심리검사비)	사설 상담기관 상담비만 해당
법률지원	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	연 350만원 이내	
활동지원	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교류활동비 등	월 10만원 이내	
기타지원	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(외모 및 흉터 교정, 교복지원 등)	운영위원회에서 결정 (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)	청소년당 2종이상 지원가능

□ 지원방식

-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·용역
 - 물품·용역을 제공한 기관·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
 -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 수급계좌로 직접 입금
- 지원장소는 특별지원 청소년의 주거에서 실시 원칙
- 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
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지원

IV 신청방법 및 과정



1. 지원신청

- **신청자** : 청소년 본인, 보호자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교원, 공무원 등
 -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·신청
- **신청기간** : 2016. 4. 8 한(동주민센터접수)
- **신청장소** :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- **구비서류**
 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(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)
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소득·재산 신고서
 -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계 서류(월급명세서, 전·월세 계약서 등)

※ 주거가 일정치 않은 청소년

- ◆ 주민등록 말소자,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른 자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 안되는 청소년은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, 사전상담 우선 실시
- ◆ 상담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 - 주민등록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
- ◆ 주민등록번호 말소자,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방식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며, 업무절차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준용

2. 대상자 조사

- **조사범위** :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
 - 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
- **조사기간** : 2016. 4. 18 한(복지정책과)

□ 조사내용

-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
- 청소년의 생계,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
-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

○ 소득조사 :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

- 생활, 건강지원 : 중위소득 60%이하
-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 : 중위소득 72%이하
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.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(소득 증빙서류 필요)
 -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
 -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(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)하고 확인서 등(예 : 소득신고서)을 첨부하여 증빙
-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(예 : 군인)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)
-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

(단위:원)

구분	가구별 소득기준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이상
2016년	중위소득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

○ 재산조사

-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= {(일반·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-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
- 기본재산액 : 5,400만원
- 소득환산율 : 주거용(월1.04%), 일반재산(월4.17%), 금융재산(월6.26%) 등

□ 위기상황 확인

- 가출, 범죄, 비행,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입증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초기상담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주변설문 등을 통해 현지 확인 조사

3. 심의 및 선정통보

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구 성 : 동작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
- 역 할
 -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 - 지원 내용 변경, 기간 연장, 중지 결정 등
 -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논의
- 심의 예외 :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개최 가능

□ 운영위원회 심의개최일 : 2016. 4. 25. (월)

□ 통 보 : 지원대상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지원기관 등

4. 사 후 관 리

□ 사회복지통합관리망(행복 e-음) 정보관리 (수시)

-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관리
- 특별지원 청소년을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사례관리

□ 대상자 자격 등 관리 (월 1회)

- 특별지원청소년 또는 주거·생계를 같이하는 부모,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, 지원변경, 지원중지
-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·금액, 관리 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
 - 특별지원청소년의 거주지, 생활실태, 위기현황
 -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(소득·재산) 등
-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(월 1회)

□ 지원내용 변경 관리 (수시)

-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
-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종류·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(중지 결정된 달)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
- 운영위원회의 중지 결정 시 사유 명시하여 서면으로 지원 청소년에게 통지
- 지원청소년이 타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 이송하여 지속 지원
-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을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보

□ 사례관리 (월 1~2회)

-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
- 사례관리계약서에 정한 내용의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계속 및 연장 등 결정
- 지원기간 종료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
CYS-Net,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
지원 유지

V 소요예산

□ 총소요예산 : 14,26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 (단위:천원)

연번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(통계목)	내 용	예 산 액
	계					14,260
1	청소년 복지증진	청소년 건전육성	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(국고보조)	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)	운영수당 및 심의위원 수당	700
2				업무추진비 (시책추진업무추진비)	업 무 추 진 비	200
3				일반보상금 (사회보장적수혜금)	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	12,200
4				민간이전(민간경상사업보조)	상 담 및 사 례 관 리	1,160

VI 향 후 계 획

-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(각 동주민센터)..... ‘16. 4. 8까지
- 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및 통보(복지정책과) ‘16. 4. 18까지
-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..... ‘16. 4. 25까지
- 지원대상자 지원 ‘16. 5 ~ 11월
- 16년 지원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..... ‘16. 12월

※따로붙임 : 신청서식 및 지침, 건강보험료판정 기준표 각 1부. 끝.